

창업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및 학생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21.2.1., 2025.3.1.)
2. “학생”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재학생 및 창업휴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2.1., 2025.3.1.)
3. “교원창업”은 교원이 연구 개발한 성과 및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학과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2.1., 2025.3.1.)
4. “학과기업”은 교원이 대표자로 참여하여 소속학과에 법인의 형태로 설치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2.1., 2025.3.1.)
5. “학생창업”은 학생이 재학 또는 창업휴학 중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2.1., 2025.3.1.)
6. 삭제(2021.2.1.)
7. “창업자”는 기업을 창업한 교원 및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2.1., 2025.3.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의한 교원창업과 학생창업에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창업에 관한 업무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개정 2021.2.1., 2025.3.1.)

②교원의 겸직 및 학생의 창업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3.1.)

제5조(위원회) 교원 및 학생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2.1.)

제 2 장 교원 창업 (제목개정 2021.2.1., 2025.3.1.)

제6조(신청자격 및 조건) ①교원은 본 규정에 따라 학과기업 창업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1.2.1., 2025.3.1.)

②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과기업을 본 대학교 내에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2.1.)

제7조(신청 절차) 학과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3.1., 2025.3.1.)

[전문개정 2021.2.1.]

[제목개정 2025.3.1.]

제8조(심의 및 승인) ①삭제(2021.2.1.)

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창업 신청을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3.1.)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개정 2025.3.1.)
2. 창업신청자의 역량 및 창업 대상 기술의 적절성(개정 2025.3.1.)
3.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개정 2025.3.1.)
4. 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및 현장실습 운영 가능성(신설 2021.2.1., 2025.3.1.)
5. 기타 창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승인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관련 부서(교원인사 담당부서 및 관련학과 등)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는 이에 따른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개정 2025.3.1.)

제9조(협약 체결) ①창업을 승인받은 교원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2.1., 2025.3.1.)

②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1., 2025.3.1.)

[제목개정 2025.3.1.]

제10조(창업 신고 및 등록) 창업을 승인받은 교원은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2.1., 2025.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설 2025.3.1.)
2. 법인 등기부등본(신설 2025.3.1.)
3. 기타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서류(신설 2025.3.1.)

제11조(겸직허가) 삭제(2021.2.1.)

제12조(창업 지원) 본 대학교는 학과기업을 창업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1., 2025.3.1.)

[제목개정 2021.2.1.]

1. 소속 학과의 실험시설 및 기자재(신설 2025.3.1.)
2. 설비(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사용(신설 2025.3.1.)
3. 지식재산권 활용(신설 2025.3.1.)
4. 대학의 정보 및 편의시설 이용(신설 2025.3.1.)

제13조(창업자의 의무) ①창업자는 매년 4월 말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2.1., 2025.3.1.)

②중요 변동사항(대표자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③창업자는 창업한 학과기업에서 소속 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1.2.1., 2025.3.1.)

④삭제(2021.2.1.)

[제목개정 2021.2.1.]

제14조(비밀유지) ①창업자는 창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개정 2025.3.1.)

②이 조항은 창업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신설 2025.3.1.)

제15조(창업자의 기부사항) ①창업자는 학과기업 설립 시 총 발행 주식의 15%를 본 대학교에 무상 증여해야 한다.(개정 2021.2.1., 2025.3.1.)

②창업자는 매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총 매출액의 10%를 본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통해 기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3.1.)

[제목개정] 2021.2.1.]

제16조(창업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2.1.)

1.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창업자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개정 2025.3.1.)
3. 학과기업이 협약체결 내용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정 2021.2.1.,

2025.3.1.)

4. 창업활동이 교육 및 연구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개정 2025.3.1.)

5. 학과기업의 성과가 미미하여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개정 2025.3.1.)

6. 학과기업이 본 대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매년 운영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2.1., 2025.3.1.)

7. 학과기업이 소속 학과 학생을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개정 2021.2.1., 2025.3.1.)

8. 창업 후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경우(개정 2021.2.1., 2025.3.1.)

9. 창업자가 2년 연속 교수업적평가 결과 하위 10%를 기록한 경우(단, 기관장 평가 및 대학발 전기여도 평가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개정 2018.12.1., 2021.2.1., 2025.3.1.)

10. 창업자 또는 학과기업이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개정 2021.2.1.)

11.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개정 2025.3.1.)

[제목개정 2021.2.1.]

[중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1.2.1.]

제 3 장 학생창업

제17조(창업휴학) ①학생은 창업활동을 위해 최대 1년간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학기 및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창업휴학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3.1.)

②창업휴학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3.1.)

③창업휴학생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본 대학교의 시설 이용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중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3.1.)

④본 대학교는 창업휴학을 승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창업 관련 교과목의 이수율 요구할 수 있다.(중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3.1.)

⑤창업휴학 신청, 심의 및 승인 업무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신설 2025.3.1.)

⑥창업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창업자는 주관부서의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며,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설 2025.3.1.)

2. 창업사업계획서(신설 2025.3.1.)

3. 현장점검신청서(신설 2025.3.1.)

4. 기타 창업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신설 2025.3.1.)

⑦ 창업휴학 종료 후 복학 시, 창업성과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3.1.)

[제목개정 2025.3.1.]

제18조(창업동아리) 삭제(2021.2.1.)

제19조(창업휴학 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5.3.1.)

1. 창업활동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신설 2025.3.1.)

2. 창업휴학자나 창업기업이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 경우(신설 2025.3.1.)

3. 창업휴학자가 주관부서의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5.3.1.)

4. 기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신설 2025.3.1.)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3.1.]

제20조(창업지원사업) ①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3.1.)

1. 창업 교육사업(신설 2025.3.1.)

2. 창업 준비 공간 지원사업(신설 2025.3.1.)

3.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신설 2025.3.1.)

4. 사업화 자문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신설 2025.3.1.)

5. 기타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신설 2025.3.1.)

②본 대학교의 학생창업지원사업 참여 학생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1. 삭제(2021.2.1.)

2. 삭제(2021.2.1.)

③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심의한 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25.3.1.)

④학생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기준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3.1.)

⑤학생창업지원사업 참여자는 사업 종료 후 주관부서에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

⑥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원된 사항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5.3.1.)

[제목개정 및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3.1.]

제21조(창업 지원)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1.)

1. 창업 교육프로그램(신설 2025.3.1.)
2. 창업 준비 공간(신설 2025.3.1.)
3. 대학 보유 기자재 및 실험 시설(신설 2025.3.1.)
4. 지도교수 멘토링(신설 2025.3.1.)
5. 사업화 자문 및 전문가 컨설팅(신설 2025.3.1.)
6.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25.3.1.)

[제목개정 및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3.1.]

제22조(창업자의 의무) ①학생창업자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5.3.1.)

②창업자는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3.1.)

[제목개정 및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3.1.]

제23조(창업 자문)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및 삭제 2025.3.1.]

제 4 장 그 밖의 사항

제24조(평가 및 환류) 삭제(2025.3.1.)

제25조(기타) 삭제(2025.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창업한 교원은 제8조(협약체결), 제10조(검직허가), 제12조(교원창업자의 의무), 제15조(교원창업자의 기부사항) 등의 조항을 본 규정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명의 변경) 이 규정의 제명은 종전 「창업 제 규정」에서 「창업 규정」으로 변경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창업 제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던 교원은 제9조(협약), 제13조(창업자의 의무), 제15조(창업자의 기부사항), 제16조(창업승인 취소) 등의 조항을 본 규정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2.1.)

협약서

유한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과 _____ 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유한대학교 학과기업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유한대학교에 소속된 “을”의 교원창업에 있어서 “갑”이 이를 허락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한대학교 및 “을”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침)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학과기업 창업에 대한 관계법령과 유한대학교 규정 및 이 협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갑”과 “을”의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은 1년마다 재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학과기업 창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한대학교 및 소속학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교수직 수행에 지장
2. 학과기업 창업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인적 피해
3. 유한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생산 손실, 시설물 및 장비 손망실 등 금전적 피해
4. 소음·진동·오염·공해·폐수 등의 환경적 피해
5. 유한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유한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② “을”은 학과기업 창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재정 기여금 및 시설사용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매년 4월 말까지 사업수행에 관한 경과 및 성과를 “갑”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기여금) ① “을”은 대학의 재정적 기여를 위해 기여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한대학교에 무상증여 및 기부하는 것으로 정한다.

1. 법인 설립 시 총 발행 주식의 15% 무상증여

2. 매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총매출액의 10% 유한대학교에 기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무상증여하는 기여금은 “갑”의 필요시 “갑”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와 기업의 매출액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및 보안,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의무) ① “을”이 “갑”의 승인을 얻어 대학 내에 설치하는 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에 대한 경비와 보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시설 및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했을 때, 또는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했을 때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 및 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면책) “갑”은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의 사업이 불가능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9조(협약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창업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창업 및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교원창업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갑” 과 사업변경승인을 득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갑” 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3. 협약의 불이행 또는 “갑” 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대학 시설물 이용시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갑” 은 협약을 해지 및 승인을 취소할 경우 “을” 에게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예정일 2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을” 이 해지 및 승인 취소 예정일을 통보 받은 후 30일이 경과 후에도 사업의 계속하는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 과 “을” 의 상호 합의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사항 통지 의무) “을” 은 사업 및 연구과제 내용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 은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관례, 교내규정, 관련법령을 준용하거나, “갑” 과 “을” 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를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 이 지정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을” 의 창업기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 이 소유하며 “갑” 은 이를 유한대학교 학생들의 교육 및 홍보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할 수 있다.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유한대학교 총 장 (인)

“을” : 유한대학교 과 교수 (인)

※ 대학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협약서 내용에 추가 ※

제A조(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 ① “을”의 학과기업 창업을 위하여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 소재 “갑” 소유의 _____ 관 호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B조(시설임대료 및 공과금의 부담) ① 제A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임대료는 3.3㎡당 _____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하며, “갑”은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및 공과금은 해당월의 25일까지 납부한다.

② 제A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제C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 “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구조변경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교가 제공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